제84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금리인하요구권 세부사항(신설) -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·중앙회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·재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 - 또한 조합·중앙회의 신용상태 개선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권, 금리인하요구 인정요건·절차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의무, 접수·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·관리의 근거 등을 마련 ▶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의2 2.신협 임원 선거운동시 공개된 장소의 범위(신설) -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가 가능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를 규정 - 다만, 선박·여객자동차·열차·전동차·항공기의 안과 터미널 구내 및 병원·종교시설·극장·조합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은 제외 ▶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7	1.비중요 2.비중요
2	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건축공사 상주감리 대상 확대(강화) 현장 상주 감리대상 건축공사를 “5개 층 이상 + 바닥면적 합계 3천㎡ 이상”에서 “2개층 이상이면서 2천㎡ 이상”으로 확대 ▶건축법 제25조, 건축법 시행령 제19조	1.중요 2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건축공사 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(강화) - 건축분야 감리원 이외에 안전분야 전담 감리원 1인을 현장에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것을 의무화 ▶건축법 제25조, 건축법 시행령 제19조	
3	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민·관 공동사업 참가자의 사업참여계획서 포함사항(신설) - 민간참여자가 민·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참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· (공모 방식의 경우) 공공-민간의 역할분담 및 책임·의무,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관련 사항, 민간참여자 이윤율, 개발이익 재투자, 사후처리방안 등 · (제안 방식의 경우) 구역경계 설정 관련 사항, 대상지 내 토지 소유 현황, 제안자의 재무현황 등 사업체 현황, 자체보안대책 등 ▶도시개발업무지침 제7조 2.민·관 공동사업 시 협약 체결 사항(신설) -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,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민·관 공동사업을 위해 체결하는 사업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(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등)을 규정 ▶도시개발업무지침 제7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건설기계의 사용·운행중지 명령(신설) -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·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·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대상 규정* * 제1호 및 제3~6호는 필수적으로 건설기계의 사용·운행 중지 명령 ▶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	1.비중요
5	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의 기준 및 신고(신설) -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가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매출실적, 수행 인력, 시설 및 장비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신고 ▶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,제3조 2.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(신설) -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(붙임2 참조)에 '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' 및 '지정요건 증명 서류' 등을 첨부하여 산업부에 제출하도록 규정 ▶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1	1.비중요 2.비중요
6	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(신설) -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를 ▲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, 뼈, 관절에 대한 수술 ▲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▲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대진료로 규정 ▶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	1.중요 2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진찰등 진료비용 게시 대상, 방법 및 행정처분기준(신설 - (게시대상) 기본 진찰, 입원, 예방접종, 검사 및 판독료 중에서 규정에서 열거하는 행위 및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진료행위 - (게시방법) 동물병원 내부(1개 이상의 장소에 책자·인쇄물 등의 방법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 등) - (처분기준) 법률에 따라 게시 의무 위반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기준 신설(1회: 7일 / 2회: 15일 / 3회: 1개월) ▶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	